

주주대표소송과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는 무엇인지?

이 재 혁 과장(법제조사파트)
jhlee@klca.or.kr / 2087-7152

【질 의】

현행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에 더하여 이중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 데, 이러한 소송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응 답】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상법 제403조).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즉, 회사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회사의 권리행사에 소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권은 소수주주권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법인은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최근 이중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904246),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904395·1904397·1904399)).

이중대표소송이라 함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주이므로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가 되고, 이는 결국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므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그 도입 취지입니다.

이 경우 대상 자회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에 따라 이중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차이가 있는 바,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소재지 대상 자회사가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자회사인 경우(예 : A사가 B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경우 B회사)에는 이중대표소송으로, 대상 자회사의 범위가 손자회사까지 확

대되는 경우(예 : A사가 B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B사가 C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B 및 C사)에는 다중대표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무부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김민경(조사팀 공시제도파트)
kimmk28@klca.or.kr / 2087-7163

【질 의】

당사는 직접취득한 자기주식과 함께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그 자기주식 처분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 답】

상장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자본시장법상 취득한 자기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3 제1항).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장내매수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여 직접취득한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교환사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한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공시 실무 FAQ, 2012, 46면 참고).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결정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이외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3)). 또한,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다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교환사채의 만기 및 교환권 행사기간을 정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별도재무제표상 관계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후 회계처리

백 경 화(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kwha01@klca.or.kr / 2087-7194

【질 의】

당사는 지난해까지 관계회사인 A사 지분을 별도재무제표상 최초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중에 A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사가 A사의 잔여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잔여 주식의 장부금액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과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요?

【응 답】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기존 잔여 주식의 장부금액(원가)과 새로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공정가치)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기준서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갑설)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존의 관계기업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을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처분 후 잔여주식이 공정가치로 평가될 것이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법적 실체 개념의 재무제표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 등을 반영하지 않고 원가법 또는 기준서 제1109호(개정 전, 현행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

● 실 전 상 담 사 례 ●

하면 됨)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¹⁾

이러한 별도재무제표의 정의를 고려할 경우 당기손익을 발생시키는 갑설로 회계처리하기보다는 을설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서 제1039호 문단 51, 53 및 55 준용).

(예시)

- 당사는 X1년 초 B사 주식 40%를 40,000원에 취득하여 관계기업주식으로 분류함.
- 당사는 X2년 말 B사 주식 중 30%를 60,000원에 처분함.
- 처분시점 잔여주식의 공정가치는 20,000원임.

처분이후 잔여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별도재무제표에 20,000원으로 표시되고, 잔여 주식의 공정가치(20,000원)와 장부 금액(10,000원 = 40,000원 × 3/4)의 차액 10,000원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서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51 및 53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51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그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문단 55(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3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문단 46(3) 과 47 참조)를 이전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당해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문단 55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55 : 손익의 인식

55 위험회피회계(문단 89~102 참조)의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문단 67~70 참조)과 외환손익(부록 A의 문단 AG83 참조)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누적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다만, 유효이자율법(문단 9 참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참조).



1) IASB는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연결 또는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어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 또는 원가법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목적적합하다고 결론지었음.